

인천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140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설재웅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5. 접수 제2854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7. 12.경 소외 C와 사이에서, 원고가 C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되 그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이 지정한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8. 5. 접수 제285412호로 마쳐졌고, 그후 2019. 10. 15.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전된 사실, 그러나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원고에게 축산물을 전혀 공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이 사건 계약 등에 관한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역시 C으로부터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고 C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말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

